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890900 장애인의 공공재화 이용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천변 친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사로 혹은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이동 시 휠체어를 이용한다. 피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천변 ○○교와 ○○교 사이 구간의 친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에서 ○○교 사이의 ○○천변 구간은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수의 흐름을 통제하여 홍수 발생 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

하천구역 내 진입로 설치의 중요목적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이며,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항은 제방의 윗부분 또는 비탈면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하는 사유로서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해당 ○○천변을 휠체어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보이거나 현재로서는 경사로나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 ○○시는 향후 「하천법」에 따른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라 진입로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천은 ○○산 ○○봉에서 발원하여 ○○강에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시의 도심지역을 관통하고, 천변에는 운동시설과 산책로 등의 친수 시설이 있다.

나. ○○천변 ○○교에서 ○○교 사이 구간에는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 27개,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12개 있다. 차량으로 접근하는 도로는 관리용 도로로서 친수시설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나, 그 중 6개의 관리용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일부허용하고 있다. 보행자의 통행을 일부허용하고 있는 6개의 관리용 도로는 비탈길에 설치되어 기울기가 11.0~20.6%이고, 손잡이 등이 없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

다. ○○천변 ○○교에서 ○○교 사이 구간에는 게이트볼장, 벤치, 축구골대, 야외운동기구 등 총 36개의 체육시설과 약 3.9km구간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다.

라. ○○천변과 동일하게, 지방하천으로 「하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청계천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19개, 승강기가 2대 설치되어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5조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차별행위

이며,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변 구간은 36개의 운동시설과 산책로의 친수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시민 전체에게 제공되는 공공재화이므로, 장애인에게 해당 재화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대체수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천변 구간에는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진정인과 같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은 친수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관리, 유지, 방재 및 순찰의 목적으로 하천의 차량용 관리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휠체어 진입로와 같은 보행자용 경사로의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기준이 없고 관리책임자인 하천관리청이 판단하여 안전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점, ○○천과 동일한 지방하천인 청계천에 장애인용 경사로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용 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를 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천변 구간의 친수시설 이용에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이 해당 공공재화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함으로써 불리하게 대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천변 친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사로 혹은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6.

위원장 최혜리

위원 김기중

위원 조현욱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①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방) ⑥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의 윗부분 또는 비탈면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제방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제17조(친수시설 등) ① 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만 설치한다.

- ②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물 흐름에 안전할 것
 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3. 환경 친화적일 것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 ③ 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